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가 2006. 6. 15 : 사천시장 제출

나 2006. 6.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33 호)

다 2006. 6. 27 :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회계과장 류재석)

가 제안이유

- 2006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변경분)

취 득 사 유	구분	수량	면적 (m ²)	예정가액 (천원)	담당부서	비고
화당산 체육시설 부지 매입	토지	1	3,794/ 33,618	3,794	문화관광과	
서부상가 주차장 확장사업 부지 매입	토지	10	1,007	359,732	지역경제과	
	건물	8동	534.08	59,026		

※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임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근호)

-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당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사천시 축동면 탑리 산149-6번지 33,168㎡ 중 산 정상에 위치한 3,794㎡를 예정가격 3,794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족구장 1면, 평행봉 외 체육시설 6종, 팔각정 및 편의시설 20개, 샤워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축동면의 당산으로서의 역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서부상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천시 서동 280번지 외 9필지 1007㎡ 및 건물8동을 예정가격 418,758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은
- 서부상가는 사천시의 관광 활성화 시책과 유람선 관광협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침체되고 있는 타지역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서부상가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 서부상가 주변 주차장의 주변 토지 및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정비 확장하려는 것으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서부시장 주변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협의취득이 불가할 경우 수용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